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1919 |
|----------|-------|

발의연월일 : 2025. 8. 1.

발 의 자 : 김동아 · 허성무 · 이상식  
박상혁 · 이광희 · 이병진  
임호선 · 손명수 · 이강일  
박균택 · 김기표 · 양부남  
김용태 · 이수진 · 홍기원  
배준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보훈병원 이용, 수송시설 지원 등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과 같은 정기적인 금전적 보상제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재 특수임무유공자는 의료비 지원이나 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현물 중심 지원을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정전협정 위반사항과 관련된 민감한 영역에 있어 공개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들은 국가를 위해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헌도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참전유공자나 다른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명예수당과 같은 정기적인 금전적 예우가 없어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낮고, 이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물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예우를 제공하고, 특수임무유공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적절히 인정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안 제75조의4 신설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상) ①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제75조의4 및 제7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4(특수임무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특수임무 수행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 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특수임무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특수임무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특수임무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특수임무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⑤ 미지급 특수임무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⑥ 특수임무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5(권리의 보호) ① 특수임무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75조의4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특수임무명예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에 따라 특수임무명예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조금 및”을 “보조금,”으로,

“생계지원금”을 “생계지원금 및 제75조의4에 따른 특수임무명예수당”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제75조의4에 따른 특수임무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u>&lt;신 설&gt;</u> | <p><u>제6조의2(보상) ①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u></p> <p><u>②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u></p> |

<신 설>

제75조의4(특수임무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특수임무 수행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특수임무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특수임무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특수임무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

<신 설>

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특수임무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⑤ 미지급 특수임무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⑥ 특수임무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5(권리의 보호) ① 특수임무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75조의4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특수임무명예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에 따라 특수임무명예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illegible]

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특수임무명예수당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                                                                                                                                        |                                                                                                                                                                                 |
|----------------------------------------------------------------------------------------------------------------------------------------|---------------------------------------------------------------------------------------------------------------------------------------------------------------------------------|
| <p>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br/>요청에 따라야 한다.</p> <p>1. ~ 10의3. (생략)</p> <p><u>&lt;신설&gt;</u></p><br><br><p>11. ~ 13. (생략)</p> <p>② ~ ④ (생략)</p> | <p>-----</p> <p>-----.</p> <p>1. ~ 10의3. (현행과 같음)</p> <p><u>10의4. 제75조의4에 따른 특수</u><br/><u>임무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u><br/><u>문</u></p> <p>11. ~ 1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